



Korean Tax Update

Samil Commentary

July 16, 2019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 발표

한-이라크 이중과세방지협정 제정 협상 타결 및 가서명

최신 세무예규판례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부는 7월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바 그 핵심은 다음 3 가지 방향으로 요약될 수 있음. 첫째, 점차 확대되는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활력 보강에 최대 방점을 둠. 둘째,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경제체질 개선과 구조적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강화함. 셋째,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포용성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고자 함.

경제활력 보강과 관련하여 기업이 투자를 미루지 않고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기업규모, 세법 개정을 통해 대상 투자자산 등에 있어 제한을 두었던 세제지원의 틀을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보강할 계획임.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한시적으로 1년간 상향: 대기업은 1%에서 2%, 중견기업은 3%에서 5%,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지원 수준을 높여 투자유인을 강화할 예정임.
- 안전시설 등에 대해서는 기업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금년말 도래하는 일몰도 2년 연장할 예정임.
- 가속상각제도도 한시 확대하여 투자에 나서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들의 초기 투자부담을 대폭 낮출 예정임.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 발표

정부는 6월 26일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함. 부가가치, 일자리 창출효과가 제조·건설 등 여타 산업의 부가가치, 일자리 효과를 크게 상회하는 서비스 산업을 혁신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함. 그 중에서 세제 지원과 관련한 주요 이슈는 아래와 같음.

재정·세제·금융 등에서의 서비스업-제조업 차별 해소

일부 서비스 업종에 국한된 조세감면 특례를 확대하기로 함.

-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 5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등) 대상업종 확대: 현재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종에만 적용하고 있으나 그 대상 업종을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업종, 고소득·자산소득 업종, 소비성·사행성 업종 등 부적합 업종을 제외하고 대폭 확대할 예정임.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서비스 업종 확대: 현재는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 종에 지원하고 있는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을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임금수준이 낮고 인력부족율이 높은 업종 등을 중심으로 확대할 예정임.

민간 R&D 세액공제 지원 강화

- 자체 수행 R&D: 조특법상 자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필요함.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가능 업종인 과학기술,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 유흥·주점업, 사행시설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암호화폐 매매·중개업 외 전 업종으로 확대할 예정임.
- 외부위탁 R&D: 콘텐츠 창작, 건축공학·기타 공학 관련 서비스 등과 같이 과학기술과 서비스가 융합된 R&D에 대해서도 과학기술 분야에 준하여 R&D 비용 세액공제를 적용할 예정임.

한-이라크 이중과세방지협정 제정 협상 타결 및 가서명

기획재정부는 6월 26일 한-이라크 이중과세방지협정 제2차 협상을 개최하여 전체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함. 이라크는 전쟁 후 재건 사업에 우리나라 건설사 진출이 증가하는 등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필요성이 높은 국가임. 한-이라크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체결로 향후 이라크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세부담이 감소되고, 과세당국간 상호합의(Mutual Agreement Procedure) 등 진출기업의 현지 과세 관련 애로사항의 해소를 위한 협의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과세문제 해결이 수월해질 전망임. 또한, 과세 관련 정보교환 및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가능해질 것임.

조세조약 상 주요 합의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사업소득:** 사무실, 공장, 지점, 건설사업장(9개월 이상 지속), 용역 제공(6개월 이상 지속), 자원탐사 및 개발(30일 이상 지속)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장에 귀속되는 분만 원천지국에서 과세 가능함.
- **투자소득:** 우리나라가 진출국 입장임을 감안, 이라크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토록 하는 등 현지 세부담을 최소화함. 즉, 이자소득은 이라크 국내 세율 15% → 5%, 사용료 소득은 이라크 국내 세율 10% → 5% 제한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 **조세회피 방지:** BEPS 논의내용 반영하여 국내세율보다 이중과세방지협정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 등의 혜택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혜택을 배제 가능하도록 함.
- **과세당국간 협력 강화:** 양국 과세당국간 상호합의, 조세 목적의 정보교환, 징수 협조 등.

동 이중과세방지협정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임.

최신 세무예규판례

[일부국폐] 독일 투과과세단체에 대한 한·독 조세조약의 적용범위와 한·독 조세조약상 조세회피 방지규정 적용 여부

이번 사건에서 투과과세단체인 독일의 유한합자회사는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우리나라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였는데, 우리나라 법인은 배당을 지급하면서 한·독 조세조약상 배당에 대한 낮은 제한세율인 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였는데, 과세관청은 한·독 조세조약 제 27 조 제 2 항의 조세회피 방지규정에 따라 동 조약의 적용을 배제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세율 25%를 적용하여 과세하였음.

이러한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은 투과과세단체에 대하여는 그 구성원이 체약국의 거주자로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에서 한·독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으며,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투과과세단체는 한·독 조세조약상 법인이 아니어서 배당에 대한 낮은 제한세율인 5%가 아닌 15%의 제한세율이 적용된다고 설시하면서 배당소득 전부에 대하여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함. (대법 2013 두 7704, 2015. 5. 28.)

위 파기환송 후 서울고등법원은 배당소득 중 투과과세단체의 독일 구성원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고, 다른 구성원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설시하는 한편, 한·독 조세조약상 조세회피 방지규정을 적용하여 동 조약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며, 이후 대법원은 이 사건 투과과세단체가 15%의 제한세율 적용을 주요한 목적으로 삼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면서 원심 판결을 수긍하여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판결함.
(*대법 2016 두 841, 2019. 6. 27.*)

상기 2015년 대법원 판결 이후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인 독일 투과과세단체의 구성원 중 독일 이외 국가의 거주자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였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러한 논란이 종식될 것으로 사료되는 한편, 이번 판결은 한·독 조세조약상 조세회피 방지 규정의 적용 여부를 다룬 최초의 판결로서 향후 유사한 사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됨.

[국패] 회생계획으로 채권이 출자전환 후 무상감자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 되었다가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이 주식병합을 통하여 감자된 경우 해당 매출채권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대손세액 상당액을 재화 등을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이번 사건의 쟁점임.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법인세법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가 출자전환된 경우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대손세액공제 해당 여부 판단 시에도 적용되는 점, 출자전환 이후의 감자는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들면서 이 사건 매출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며, 이후 대법원은 본 사안에 대하여 심리불속행기각 판결함. (*대법 2019 두 31853, 2019. 5. 10.*)

최근 대법원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주식이 전부 무상소각된 경우 출자전환된 채권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여 대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라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는데 (*대법 2017 두 68295, 2018. 6. 28, 대법 2016 두 65565, 2108. 7. 11.*), 이번 사안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출자전환 주식이 전부 무상소각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대법원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음.

한편, 2019. 2. 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시 대손세액공제 규정상 대손사유로서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 하는 경우'가 추가되었는 바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Contacts

국제조세	내국세	이전가격 & 국제통상	사모펀드에 대한 M&A 세무자문
이중현 709-0598 alex.lee@pwc.com	오연관 709-0342 yeon-gwan.oh@pwc.com	이희태 3781-9083 heui-tae.lee@pwc.com	탁정수 3781-1481 jeongsoo.tak@pwc.com
김상운 709-0789 sang-woon.kim@pwc.com	이영신 709-4756 young-sin.lee@pwc.com	헨리 안 3781-2594 henry.an@pwc.com	금융세무
이상도 709-0288 sang-do.lee@pwc.com	김진호 709-0661 jin-ho.kim@pwc.com	전원엽 3781-2599 won-yeob.chon@pwc.com	박태진 709-8833 taejin.park@pwc.com
이동복 709-4768 dongbok.lee@pwc.com	황철진 709-0759 chul-jin.hwang@pwc.com	조정환 709-8895 junghwan.cho@pwc.com	정훈 709-3383 hoon.gp6.jung@pwc.com
정종만 709-4767 chong-man.chung@pwc.com	정복석 709-0914 boksuk.jung@pwc.com	해외투자 세무자문 김주덕 709-0707 michael.kim@pwc.com	비영리법인 지원센터 변영선 3781-9684 youngsun.pyun@pwc.com
신현창 709-7904 hyun-chang.shin@pwc.com	남형석 709-0382 hyungsuk.nam@pwc.com	세무진단 및 세무조사지원 김성영 709-4752 sung-young.kim@pwc.com	중소기업 · 스타트업지원센터 김봉균 3781-9975 bong-kyoon.kim@pwc.com
조창호 3781-3264 changho.jo@pwc.com	남동진 709-0656 dong-jin.nam@pwc.com	M&A 세무 정민수 709-0638 minsoo.jung@pwc.com	Knowledge & Innovation 조한철 3781-2577 han-chul.cho@pwc.com
오남교 709-4754 nam-gyo.oh@pwc.com	나승도 709-4068 seungdo.na@pwc.com	정선홍 709-0937 sun-heung.jung@pwc.com	삼일인포마인 송상근 709-0559 sang-keun.song@pwc.com
서백영 709-0905 baek-young.seo@pwc.com	노영석 709-0877 yongsuk.noh@pwc.com	최혜원 709-0990 hyewon.choi@pwc.com	삼일세무법인 정찬우 709-0692 thomas.chanu.chung@pwc.com
차일규 3781-3173 il-gyu.cha@pwc.com	조성욱 709-8184 sung-wook.fs1.cho@pwc.com	해외파견 세무 및 기업운영지원 박진아 709-0797 jina.park@pwc.com	피더블유씨 관세법인 이영모 3781-3140 youngmo.lee@pwc.com
김광수 709-4055 kwang-soo.kim@pwc.com	신윤섭 709-0906 yoon-sup.shin@pwc.com	상속증여& 주식변동 이현종 709-6459 hyun-jong.lee@pwc.com	
류성무 709-4761 seongmoo.ryu@pwc.com	선병오 3781-9002 byung-oh.sun@pwc.com	지방세 조영재 709-0932 young-jae.cho@pwc.com	
김영옥 709-7902 young-ok.kim@pwc.com	장현준 709-4004 hyeonjun.jang@pwc.com		
로버트브로웰 709-8896 robert.browell@pwc.com	최유철 3781-9202 yu-chul.choi@pwc.com		